보 도 자 료

배포 일시		2013. 9. 16. 총 13매, 대책 별도 배포	
담당 부서	기 재 부	산업경제과	• 과장 이종화, 사무관 최성영 • ☎ (044)215-4530, 4533
	미 래 부	연구공동체지원과	• 과장 임승철, 사무관 이찬영 • ☎ (02)2110-2470, 2495
	산 업 부	기업협력과	• 과장 오승철, 사무관 이우일 • ☎ (02)2110-3750, 3978
	고 용 부	노동시장정책과	• 과장 정형우, 사무관 이영진 • ☎ (02)2110-7164, 7160
	공 정 위	기업거래정책과	• 과장 정진욱, 서기관 김근성 • ☎ (044)200-4583, 4584
	금 융 위	산업금융과	• 과장 김정각, 사무관 정태호 • ☎ (02)2156-9750, 9757
	병 무 청	산업지원과	• 과장 홍승미, 서기관 권영규 • ☎ (042)200-4331, 2772
	방 사 청	기술분석담당관	• 과장 이재율, 중 령 길계호 • ☎ (02)2079-6850, 6858
	중 기 청	중견기업정책과	• 과장 황수성, 사무관 이순배 • ☎ (042)481-6810, 6811
	특 허 청	산업재산정책과	• 과장 김용선, 사무관 이은정 • ☎ (042)481-5168, 5170
	한 국 은 행	금융기획팀	• 팀장 장한철, 과 장 김준철 • ☎ (02)759-4491, 4502
보 도 일 시		2013. 9. 17 11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

–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으로 중견기업 육성 –

□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**「中小 → 中堅 → 大企業」으로 성장** 가능한 **"희망의 사다리 구축"이 본격화**된다.

○ 정부는 9월 17일(화) 개최된 **제20차 "경제관계장관회의"**에서 **『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』을 발표**하고, 단절되어 있는 기업 **성장사다리 복원에 착수**한다고 밝힘

□ 이번 대책은 **"중견기업 대표단 오찬 간담회"**(8.29, 청와대) 등 그간 제기된 **중견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**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**근본적인 방안을 마련**한 것으로,

○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**'피터팬 증후군'을 해소**하고 **성장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**를 강화하여, 우리 경제의 허리인 **건실한 중견기업群을 키우기 위한 것임**

대책수립 배경

□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**'피터팬 증후군'이 만연**해 있고, **단계별 성장사다리가 단절**된 상태임

○ **주된 원인**은 **"중소기업은 보호·지원, 중견기업은 지원 배제"**라는 **이분법적 접근**으로, 기업이 **성장을 기피**하고 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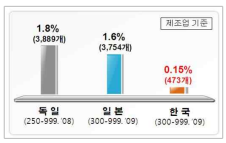
○ 중견기업의 **성장 단계에 맞는 별도 지원 시스템**이 미흡하여, **추가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**을 겪고 있는 것에 기인

□ 이러한 이유로 인해, 우리나라 **중견기업群**은 지난 10년간 **연평균 6%대**의 **지속적인 성장세**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* **('03) 876개사 → ('11) 1,422개사**(관계기업 1,383개사 제외)

○ 아직도 절대적 규모(전체기업수의 0.04%)는 **대기업 계열사 수(1,512개)보다 적고,**

○ **중간규모 기업군의 비중이 獨·日의 1/10**에도 못 미치는 **매우 취약한 실정**



□ **산업의 '허리층'**인 중견기업의 **취약성이 지속**되면, "노력한 만큼 성장"하는 **"경제부흥" 실현**과 **중소·중견기업 성장**을 통한 **일자리 창출, 중산층 복원**이 **곤란한 상황**

○ 이에 중소·벤처 → 중견 → 대기업으로의 **원활한 성장사다리 복원**을 통해, **중견기업群**을 **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**으로 육성하고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되었음

대책 주요내용

1 **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**,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**주요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**하여, **연착륙(sliding down) 유도**

- **매출 2천억원 미만 중견기업**의 **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제한적 허용**
- **R&D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→ 5천억원 미만)**

2 **글로벌 경쟁력 제고**를 위한 **맞춤형 지원체계 강화**

- 중견기업에 대한 **R&D투자를 '17년까지 5% 수준으로 제고**하고, **전문연구요원의 중견기업 배정도 지속적으로 확대**
- **월드클래스300** 프로그램을 **'17년까지 조기 완료**하고, **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**
- **포괄금융 적용대상 확대(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 → 2억불 이하)**
- **총 7천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**

3 **중소기업 범위 기준**을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**합리적으로 재조정**

4 **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**

- **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(매출 2천억원 이하 → 3천억원 미만)**
- **별도의 "중견기업 특별법" 제정 추진**

1. 中小 → 中堅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

□ 정부의 정책·제도가 기업의 **실질적 성장 정도**를 고려하지 않고, **"중소기업 여부"**만을 기준으로 **중견기업을 제외**시키고 **일시에 지원을 중단**하고 있음

○ **중소기업 지원 법률은 54개***이나 **중견기업 관련 별도 법률은 없고,** 그나마 중견기업 개념이 명시된 법률도 3개**에 불과함

* 기본법 1, 분야별 개별법 15개, 고용·세제·금융 등 38개 법률이 "중소기업에 한정한 지원제도"를 운용(지원사업 : 총 202개, 10.9조원 규모)

** 산업발전법, 조세특례제한법, 산업기술혁신법(지원사업 : 2개, 562억원)

○ 이러한 **제도 운영의 결과,**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**77개 정부 지원이 배제·축소**되는 **"지원 絶壁"에 직면**하고,

* 세제 33개, R&D·정보화 10개, 수출·판로 10개, 인력 9개, 금융 7개, 기타 8개

- 또한, **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**하여 **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**하게 되는 **"규제 山城"에 봉착**하게 됨

* 목적물 수령 60일 이내 대금 지급의무(하도급법 §13),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10일이내 개시 의무(하도급법 §16의2), 위탁기업 행위제한 14가지(상생법 §25)

□ 이에 정부는 **중견기업이 되더라도,** 필요한 **주요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**하되,

○ **"중소기업 여부"가 아닌 "매출액 등 성장정도"에 비례하여 점차 감소**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

○ 이에 **매출 5,000억원 미만 중견기업**을 중심으로, **성장 단계에 따라** 정책 수단별로 **차등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**하기로 하였음

* **중견 <u>진입초기</u> 단계**까지 → 급격한 시장 축소 및 인력 확보 애로
중견 <u>추가성장</u> 단계까지 → R&D 투자 애로,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

<중견기업 성장부담 단계적 축소 방향>



1 중견기업 진입 초기 (매출 2천억원 미만) :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

○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일시 퇴출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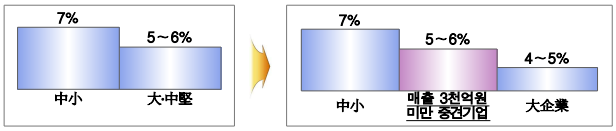
- **매출 2,000억원 미만 중견기업**에 한해 **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참여를 허용**하고,

-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**매출규모 등에 따라 중기간 경쟁시장 납품비중을 단계적으로 완화**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

○ **대기업과 동일**하게 취급되던 **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**도 대기업에 비해 **완화된 권고가 적용**되도록 유도키로 하였음

2 중견기업 정착기 (매출 3천억원 미만) : 인력확보 애로 해소

○ 현행 중소-大·중견기업의 **2단계 고용유지·증가기업 투자세액 공제 구조를 개선**, 매출 **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**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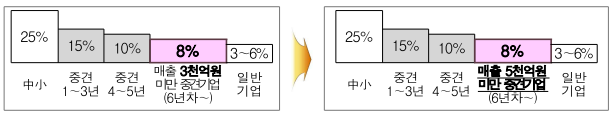


○ **대학 계약학과 운영** 및 **재직자·연구인력 교육** 프로그램 신설 등 **고용지원 정책 일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**할 계획

3 중견기업 성장기 (매출 5천억원 미만) : 기술혁신 역량기반 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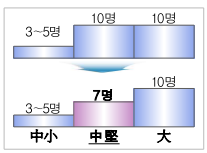
① 중견기업 R&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

○ **R&D 세액공제***(공제율 8%)가 적용되는 **중견기업 범위**를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,000억원 미만 → **5,000억원 미만으로 확대**



② 중견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 완화

○ 매출 5,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**별도 인적요건 구간을 신설**하고,



* 전담요원 요건 개선안 : <中小> 3~5명 → **<中堅> 7명** → <大> 10명

- 중소 →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**기존 연구전담요원***은 **자격요건의 자동 승계**를 허용하겠음

* 중소기업 시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은 인력 (전문대·고졸 등)

4 공 통 : 하도급거래시 보호 강화 및 금융투자 여건 개선

① 하도급거래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

○ 3년 평균 매출액이 **일정규모** (예 : 6천억원) **미만인 중견기업**에 대해서도 **하도급거래시 보호**받을 수 있도록 **하도급법을 개정**

* 대기업-중견기업 간, 매출액 차이가 나는 중견(大)-중견기업(小) 간 적용

②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

○ **산업은행, 정책금융공사**의 **중견기업 자금공급 기능 강화**
: ('12) 12.9조원 → **('13) 15.1조원 (2.2조원↑)**

* 산 업 은 행 : ('12) 9.9조원 (中小 11.7) → ('13) **12조원** (中小 12.0)

* 정책금융공사 : ('12) 3.0조원 (中小 4.0) → ('13) **3.1조원** (中小 4.1)

③ 한국벤처투자조합 (KVF)*의 중견기업 투자 허용

* 벤처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펀드로, 현재 중소·벤처기업에 한해 투자 가능

○ **중견기업이 추가 성장**을 위해 **중소기업을** M&A하는 경우, **조합 출자총액의 40%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**토록 하겠음

2.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□ 중견기업 중 상당수가 **해외시장 개척 미흡, 신성장동력 부족** 등 **자체 성장역량 미비**로 인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가는 데 한계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**"중견기업 = 準 대기업"**이라는 인식으로 인해, **정부의 관심과 지원 우선순위에서 사각지대**에 놓여있는 상황

* 정부 R&D 지원 비중('12) : (中小) 13.17%, **(中堅) 2.95%, (大) 6.11%**

□ 이에, 정부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**세계적 전문기업으로 발전**할 수 있도록 별도의 **지원체계를 확충**하여,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

1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&D투자 확대

○ 산업부·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**중견기업 R&D 투자**를 ('12) 2.95% → **('17년) 5% 수준으로 지속 확대**하는 한편,

○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·육성하는 **「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」**를 **'17년까지 조기에 완료** (당초 '20년까지)하고,

* '11~'13년간 **100개사 선정** ('13년 550억원), 18개 지원기관·25개 시책을 연계하여 **기술개발·글로벌화·인력** 등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

-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* **우수 졸업기업 등**에 대해 **우선적으로 연계지원**할 계획임

* **수출 유망 중소기업**을 선발, 해외진출 역량을 맞춤형으로 지원 ('13.하, 100억원)

2 전문 연구인력 등의 중견기업 공급 및 유입 촉진

○ '13년부터 제외된 대기업 배정인원 ('12. 22%)을 활용, **중견기업**에 대한 **전문연구요원 배정비율을 대폭 확대**하기로 하였으며,

* 중견기업 배정 비율 : ('13) 6.8% (171명, 中小 1,070명) → ('14) 12% → ('15) 20%

○ **독일의 직업훈련제도**와 유사한 **"한국형 일·학습 병행 시스템*"**을 우수 **중견기업 중심으로 도입·운영**할 예정임

* 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해 **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**할 수 있는 **일터 기반 학습**(work based learning) 제도

3 연구개발 결과물의 중견기업 이전·활용 활성화

○ 대학·출연(연)이 보유한 **미활용 원천기술**을 발굴하여, **출연(연) 중심의 공동 사업화 R&D** 수행후 **중견기업에 이전하는 방식**으로,

- 중견기업 전용 **원천기술 실용화 R&D프로그램 (대학-출연(연)-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)을 신설할 계획**임

* '13년중 10개 과제 (과제당 5억원, 최대 2년간)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



○ **국방기술의 민간 이전·활용 촉진**을 위해,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따른 **기술료 감면 (中小 50%, 中堅 25%)** 및 국방과학연구소 (ADD) **기관평가시 중견기업 지원실적을 반영**하고,

○ 중소·중견기업이 **출연(연) 보유 미활용 특허기술을 사업화**할 경우, **선급기술료를 면제**하고, **경상기술료 (Running Royalty) 위주로 계약을 체결**토록 활성화해 나가겠음

4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 : 7,000억원 이상 규모

○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, **총 5억불 규모***의 **중견기업 중심**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**글로벌 펀드 조성** ('13.12)

○ 모태펀드에서 최대 40%까지 출자하는 **「중견기업 육성 펀드」**도 **('13) 500억원 → ('14) 1,300억원으로 대폭 확대**하여 글로벌화 추진 및 성장기반을 확충하겠음

5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

○ 한국은행 **포괄금융* 적용기준**을 현행 수출 실적 5천만불 이하에서 **수출 2억불이하 기업으로 확대**하고,

* 수출 5천만불~2억불 이하 기업 : (中堅) 132개사, (中小) 204개사

○ **수출 중견기업**에 대한 **대출·보증 및 무역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해 나가겠음

* **수출입은행 대출·보증 확대 :** ('12) 7.8조원 (中小 15.1) → ('13) 9.0조원 (中小 16.5)

* **무역보험 확대** : ('12) 14조원 (中小 15.5) → ('13) 16조원 (中小 24)

6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가동

○ 수출 1억불 달성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**「글로벌전문후보기업」**을 선정하여, **4대 정책플랫폼 (전략·금융·인력·마케팅)**을 제공하고,

- 현재 운영 중인 **20여개 핵심 지원 시책** (기술·무역투자·금융·인력)을 선정기업에게 **우대 집중지원**하여,

* 국제공동 R&D 우대가점, 1:1 표준전문가 전담서비스, 한중 FTA 자문 등

○ **'17년까지** '수출 1억불 이상'의 **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**해 나가겠음

3.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

□ **현행 중소기업 범위**의 기준과 결정 방식은 기업의 실질적인 **"성장여부" 보다 "기업의 선택"에 의해 좌우**될 소지가 다분

○ 특히, 제조업, 건설업 등에 적용중인 **"자본금"** 지표 및 **"택일주의*"** 등에 대한 **비판적 시각이 확산**

* **근로자 또는 자본금 (매출액) 중 하나만 충족**하면 되는 '택일주의'는 근로자 수 조정 등 **인위적 방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잔류를 허용**

○ 또한 중소기업 **유예제도 (3년)에 제한이 없어**, 졸업 후에도 조건만 맞으면 **무한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회귀**도 가능한 실정

* '06~'11년간, 중견기업 중 연평균 **73개 기업이 인위적 방법** (근로자 감소 50%, 지분변동 34%)을 통해 **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**

1 기업성장 여부가 반영되도록 범위 기준 개편

○ 미국, EU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**적용지표** (근로자·자본금·매출액), **업종별 기준, 택일주의** 등을 재검토

* 검토 방향 : 자본금 지표를 폐지하고 매출액 지표로 대체, 택일주의 폐지 여부, 단일 지표 적용 여부 및 기준 등

2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

○ 인위적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**지속 유지하는 것을 차단**하기 위해, 중소기업 졸업 **유예는 최초 1회로 한정**하겠음

3 M&A를 통한 중견기업의 추가 성장 지원

○ 중견기업이 **우호적 M&A**를 통해 **중소기업*의 대주주**가 되는 경우, **피인수기업**에 대해 **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**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

⇒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, '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' 최종 확정할 계획 ('13.11)

4.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

□ 아울러, **한국형 100년 장수기업** 육성 여건 조성 및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**법적기반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**하겠음

□ 먼저,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부담 완화를 위해,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현 매출액 **2,000억원 이하에서 3,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**키로 하였음



□ 아울러,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**정책의 지속적·체계적 수립·시행**을 위해, **『중견기업 특별법』을 조속히 제정**할 계획임

○ 특별법 제정은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, 공청회 등 **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**하겠음

* **특별법 주요내용** : 판로, 기술 등 분야별 성장부담 완화 특례규정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

참 고

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(요약)

□ **「中小 → 中堅 → 大企業」으로 성장 가능한 "희망의 사다리" 구축**

중견기업이 되더라도 **세제, R&D 등 꼭 필요한 지원은 지속**하고,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**별도 지원체계 구축**

1 중소 → 중견기업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(sliding down)



성장단계 (매출)	핵심 애로	기존 제도	성장사다리 대책 내용
~2천억원	판로	-	• **중기간경쟁제품** 제한적 참여 • 적합업종 규제 수준 완화·조정
~3천억원	고용·인력	-	• **고용창출** 투자세액공제 • 계약학과 등 고용지원 확대
~5천억원	R&D	- (R&D투자 세액공제 3,000억원 미만)	• **R&D투자 세액공제 확대** (매출 3천억원 → 5천억원) • **기업부설연구소** 요건 완화
5천억원~ (공통)	수출·금융·하도급 등	• 졸업 5년간 최저한세율 점진인상 (7→10%) • 졸업 5년간 신·기보 가산 보증료 점진 인상(1→5%)	• **하도급거래** 보호(6천억원 미만) • **전문연구요원** 배정 확대 • **포괄금융**(수출 5천만불→2억불) • 산은 등 **정책자금 지원** 확대

2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(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)

정책 과제	성장사다리 대책 내용
▶중견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	• **R&D투자 확대** : ('11) 2.8% → ('17) 5% 이상 - 중소-중견기업간 협력 R&D 프로그램 신설 • **전문연구요원** 배정 확대 : ('13) 6.8% → ('15) 20% • 연구개발 결과물의 **중견기업 이전·활용** 활성화 - **원천기술 실용화** 사업 추진 (최대 2년간, 5억원) - **경상기술료 (running royalty) 제도** 활성화 - 국방과학기술 기업이전 **기술료 감면** (중소 50%, 중견 25%) • 전략 수립 및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
▶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확충	• 수출촉진 : **글로벌 하이웨이** 프로그램 신설 ('13, 100억원) • '17년까지 **월드클래스 300** 선정 완료 및 종합지원 강화 • **7,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** 조성 - **중견기업 글로벌 펀드** 조성**(5억불)** - **중견기업 육성펀드** 확대 : ('13) 500억 → **('14) 1,300억원**
▶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가동	• '17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 **글로벌 전문기업 400개** 육성 • **무역금융** 지원 확대 - **포괄금융 적용대상** 확대 : 수출실적 5천만불 → **2억불이하** - **수은**의 대출·보증 확대 : ('12) 7.8조원 → ('13) 9조원 - **무역보험** 확대 : ('12) 14조원 → ('13) 16조원

3 기업 성장사다리 기반 확충

① **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**

- **외국 사례**를 참조하여 기업의 성장여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**적용지표(근로자·자본금·매출액), 기준** 등을 재검토
- **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중 확정**

② **가업승계 공제** 대상 확대 : 매출 2천억원 이하 → **3천억원 미만**

③ 금년말까지 **「중견기업 특별법」** 발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**중견기업정책과 이순배 사무관(☎ 042-481-6811)**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